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3월 21일
의회 운영 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3월 10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3년 3월 21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엄셋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현재의 청원심사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 구제와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인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의 위임에 따라 현재의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정」 을 폐지하고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」 으로 제정함.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 및 관련 상위 법령을 적용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규칙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발의한 안건임.
- 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2조는 금천구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천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함.
 - 안 제3조와 제4조는 청원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원인에게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. 이때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불수리사항을 통지하여야 함.
 - 안 제5조는 접수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 - 안 제6조는 의장이 청원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.
 - 안 제7조와 제8조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청원심사에 필요시 소개한 의원은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, 청원인 등의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안 제11조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청원자에게 통지해야 하며,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2가지(구청장이 처리 또는 의회에서 처리)로 구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.
- 안 제12조는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.
-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청원인에 대한 통지와 청원 철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
-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향조정된 규칙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, 주민의 권리규제와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인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제정안이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